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5. 9. .

제안자 : 여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2883	정춘생 의원	2024. 8.16.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3158	장철민 의원	2024. 8.23.	○ 제418회국회(정기회) 제4차 전체회의(2024.11.18.)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4964	최기상 의원	2024.10.28.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05308	이달희 의원	2024.11. 6.	○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2.13.)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5. 9.22.)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 9. 22.)는 위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29회국회(정기회) 제4차 여성가족위원회(2025. 9. 24.)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에 걸린 기간을 피해자 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취학에 걸린 기간에 미성년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상담 등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각급 학교의 장이 성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 상담 등의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

또한,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

당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치료, 상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은 그 조치로 인한 결석을 출석 일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에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을 추가함(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가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으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 신설).

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등의 상담원·종사자 등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성폭력상담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2. 심리 상담
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1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사자”를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피해자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생 략) <u><신 설></u>	제7조(피해자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 지원) ① (현행과 같음) <u>② 일상생활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u> <u>1. 성폭력으로 인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u> <u>2. 심리 상담</u> <u>3.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조치</u>
<u>②</u> 출석일수 산입 등 <u>제1항</u> 에 따른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③</u> ----- <u>제1항</u> 및 <u>제2항</u> ----- ----- --.
<u>③</u> · <u>④</u> (생 략)	<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 -----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생략)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

-----.

1. ~ 3. (현행과 같음)

4. 퇴소 시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 다만, 제17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보호시설을 퇴소한 경우는 제외한다.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

-----.

1. · 2. (현행과 같음)

3. -----
-----.
다만, 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 6.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

4.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항 제6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입소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5세가 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3항-----

-----.

제19조(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①

종사자(이하 “상담원등”이라 한다)-----.

1. ~ 4. (생략)

②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의3(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제1항제3호·제3호의2·제4호에 따른 상담원등의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상담원등이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상담소·보호시설·통합지원센터 및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에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
죄경력조회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